

【첨부1】

전자팩시밀리를 이용한 선상투표 참여

1 배 경

- 「공직선거법」 제38조 제2항이 개정('18. 4. 6.) 되면서 전자적 방식의 팩시밀리 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
- 선박 통신환경 변화(팩시밀리, 전화 ⇒ 인터넷)에 대응하여 선상투표 선거인의 신고 및 투표편의 제고를 위하여 도입

2 참여방법

- ① 전자팩시밀리를 이용한 선상투표 참여를 원하는 선박은 전자팩시밀리 이용신청서(별지 3-2)를 작성하여 중앙선관위 메일주소(shipvote@nec.go.kr)로 발송
※ 선박별로 선장이 신청가능하며, 중앙선관위에서 확인 후 선박별 계정 부여
- ② 가입승인메일을 확인 후 선상투표홈페이지(<https://shipvote.go.kr>)에 로그인하여 이용 가능
※ 가입승인메일 확인 시까지 약 1일의 시간 소요
- ③ 선상투표신고부터 투표(용)지 송·수신 등 선상투표 전 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가능 ⇒ [별지 4] ‘ 전자팩시밀리 이용매뉴얼 ’ 참조

3 요청사항

- 선상투표기간에 인터넷 데이터 사용량 및 사이트 접속 제한 해제, 선원 등이 선상투표관련 외 타용도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
- 선박의 위성통신환경(파일 업로드 및 전송 가능 여부), 복합기 등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이용방법 사전 숙지